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6
----------	-------

발의연월일 : 2019. 1. 22.

발의자 : 추경호 · 김용태 · 김광림
정진석 · 박덕흠 · 김선동
김상훈 · 곽상도 · 이학재
김정재 · 김도읍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153,314천 m²)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
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법률 제 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를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를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절차 통지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